

제 2024-085 호

## 환경성적표지 인증서

- 상 호 명 : 유진기업 (주)
- 사업자등록번호 : 130-81-22624
- 소재지 :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석천로 457 (삼정동) 1층(삼정동)
- 공장소재지 :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산면 영서로 915
- 대표자성명 : 최종성
- 대상제품 : 레미콘 [25-24,강원도]
- 제품명 :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[25-24(80,120,150,180), 강원도]
- 인증기간 : 2025년 01월 21일 ~ 2028년 01월 20일
- 인증내용 : 환경성적표지(별첨)

※ 재발행사유 변경 인증

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」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환경성적표지를 인증합니다.

2025년 01월 21일

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



[별첨1]

제 2024-085 호

○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정보

환경영향범주	제조전단계	제조단계	사용단계	폐기단계	총값
자원발자국 (kg Sb-eq./m3)	5.64E-01	2.24E-02	-	-	5.87E-01
탄소발자국 (kg CO <sub>2</sub> -eq./m3)	2.20E+02	3.52E+00	-	-	2.23E+02
오존층영향 (kg CFC-11-eq./m3)	1.59E-02	2.73E-06	-	-	1.59E-02
산성비 (kg SO <sub>2</sub> -eq./m3)	3.03E-01	8.60E-03	-	-	3.12E-01
부영양화 (kg PO <sub>4</sub> <sup>3-</sup> -eq./m3)	7.15E-02	1.23E-03	-	-	7.28E-02
광화학스모그 (kg C <sub>2</sub> H <sub>4</sub> -eq./m3)	6.05E-02	2.29E-04	-	-	6.07E-02
물발자국 (m <sup>3</sup> H <sub>2</sub> O-eq./m3)	4.55E-01	1.19E-01	-	-	5.74E-01

○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정보

구분	기업명	공장소재지	제품명	비고
생산재	유진기업 (주)	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산면 영서로 915	레디믹스트 콘크리트 [25-24(80,120,150,180), 강원도]	갱신 및 변경

# 환경성적표지 인증 약관

한국환경산업기술원(이하 “인증기관”이라 한다)과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자(이하 “인증기업”이라 한다)는 다음 각 조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환경성적표지는 국제표준 ISO 14025(Environmental labels and declarations-Type III environmental declarations-Principles and procedures)에 근거하여 한국정부(환경부)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환경성선언 제도이다. 환경성적표지는 제품 및 서비스의 원료채취, 생산, 수송·유통, 사용, 폐기 등의 모든 과정에 대한 환경영향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 라벨 형태로 제품에 부착하는 제도이다. 환경성적표지 제도는 탄소발자국(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), 물발자국(수질 및 수자원에 미치는 영향), 자원발자국(폐기물발생 및 자원순환에 미치는 영향), 오존층영향(대기질에 미치는 영향), 산성비(토양환경에 미치는 영향), 부영양화(수질 및 수자원에 미치는 영향), 광화학 스모그(대기질에 미치는 영향) 7가지의 영향범주별 환경성적을 포함하며, 탄소발자국은 저탄소제품을 포함한다.

**제1조(목적)** 이 약관은 “인증기업”과 “인증기관”의 환경성적표지 인증에 관한 기본적인 권리 및 의무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적용범위)** 이 약관은 해당 인증서 상에 기재된 인증내역에 대해서 적용한다.

**제3조(준수사항)** “인증기업”은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1. 인증제도와 관련된 법규를 항상 준수하여야 한다.
2. 작성지침 및 「저탄소제품 기준」고시에 부합되도록 제품을 생산하여야 한다.
3. 인증제품의 생산 및 판매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.
4. 환경성적표지 도안은 환경성적표지 적용기준을 명확히 표기해서 부착하여야 한다.
5. 인증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“인증기관”에서 직접 실시하는 정기 및 특별 사후관리 심사에 협조하여야 한다.
6. 다음과 같은 인증 관련 변경사항을 지체없이 “인증기관”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  - 가. 대표자 변경, 상호 변경, 제조공장의 이전 또는 변경, 인증등록 조직의 부도, 양도, 양수 또는 합병, 생산의 중단 및 폐업
  - 나. 생산공정, 설비, 공법의 변경
7. “인증기업”은 인증이 종료되거나 취소된 경우 인증 획득사실과 관련된 모든 광고물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.

**제4조(환경성적표지 사용 권한 및 사용 시 유의사항)** “인증기업”은 인증제품에 대하여 인증기간 동안 환경성적표지 도안 사용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. 환경성적표지 도안의 사용은 다음 각 항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.

- ① 환경성적표지 도안은 「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」(이하 “작성지침”이라 한다) 별표6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, 「환경성적표지 인증 업무규정」(이하 “업무규정”이라 한다) 제32조(환경성적표지 표시방법 및 형태)를 준수하여야 한다.
- ② “인증기업”은 제1항과 관련하여 환경성적표지 도안을 표시하거나 환경성적표지에 관한 광고를 할 경우 인증제품 및 설명서, 제품의 포장·용기·홍보물·각종 서식 등에 사용할 수 있다. 다만, 인증제품이 아닌 품목과 함께 선전하는 경우에는 인증제품이 아닌 품목이 인증제품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.

**제5조(비밀유지)** “인증기업”과 “인증기관”은 업무상 취득한 상호간의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는다. 이 의무는 인증이 종료된 후에도 유효하지만, 합법적으로 일반화된 정보 또는 업무와 무관하게 합법적으로 취득한 정보는 본 조항의 저촉을 받지 않는다.

**제6조(인증의 범위)** “인증기관”이 “인증기업”에게 부여하는 인증은 “인증기업”의 해당 인증서 상에 기재된 제품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며, “인증기업”이 생산하는 제품 전부를 승인 인증하는 것은 아니다.

**제7조(인증제품 제출)** “인증기업”은 인증을 받은 후 환경성적표지 표시사항 등과 관련하여 환경성적표지 도안에 표시된 인증제품 제출에 대한 “인증기관”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“인증기관”에게 제출해야 한다. 다만, 제품 특성, 가격 등을 고려할 때 견본제품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환경성적표지가 표시된 제품 설명서 제출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.

**제8조(관련 지침의 변경)** “인증기관”은 해당 제품의 작성지침 또는 「저탄소제품 기준」 고시가 제·개정되었을 경우, “인증기업”에게 제·개정된 작성지침 또는 「저탄소제품 기준」 고시를 통보해야 한다.

**제9조(갱신인증)** “인증기업”은 환경성적표지 인증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, 인증기간 만료일 90일 전부터 갱신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.

**제10조(인증내역 변경)** “인증기업”은 인증서에 명시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“인증기관”에게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.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또는 재고부 신청을 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“인증기업”에 있다.

**제11조(시정권고 및 인증취소)**

- ① “인증기업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, “인증기관”은 “인증기업”에게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.
  1. 환경성적표지 인증서의 내용과 달리 사용한 경우
  2. 환경성적표지 도안을 작성지침 별표 6과 다르게 사용한 경우
  3. 제3조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  4. 과장광고(대리점 및 위탁판매 등 유통업체 포함)로 소비자의 판단을 흐리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
  5. 그 밖에 “인증기관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
- ② “인증기업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, “인증기관”은 “인증기업”의 해당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.
  1.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취득한 경우
  2. 인증의 내용과 다른 제품에 환경성적표지를 표시하여 유통시키는 경우
  3. 인증을 받은 제품을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없이 1년 이상 유통시키지 않은 경우
- ③ 관계법령 및 고시 등에 별도로 처분이 규정된 사항은 해당 처분기준에 따른다.

**제12조(관련업무)** ① “인증기업”은 인증제품에 대한 인증기간 만료로 인증이 종료되거나 제11조제2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소비자가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여타의 표시 및 광고를 하여서는 안 된다.

- ② “인증기업”은 제1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“인증기관”이나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법에 따른 보상 등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.

**제13조(보상책임)** 인증제품과 관련하여 소비자 및 “인증기업”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“인증기업”에게 있다.

**제14조(권리·양도 등 금지)** “인증기업”은 인증서에 정한 환경성적표지 사용권한을 제3자에게 양도·전매 또는 대리사용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.

**제15조(이해조정)** 이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“인증기업”과 “인증기관”간 상호 협의 및 업무규정에 따라 결정하되 쌍방의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“인증기관”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.